

목 차

■ 지평 소식 ■

- 박상배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4
- 윤재민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5
- 부산사무소 임방조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6
- 황희동 변호사 영입.....7
- 공익런치행사 '나의 Lunch box - 한끼의 식사 나눔 캠페인' 외.....8

■ 주요 업무 사례 ■

- 정명훈 지휘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고발 사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14
- 전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15
- 개발업체 부사장 박모씨를 대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K-voting) 관련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16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 위헌결정 승소.....17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조항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 진행.....18
- 서울시를 대리하여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에 대한 무효확인등을 구한 소송'에서 승소.....19
- 김해시를 대리하여 SPC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제기한 행정소송 승소.....20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2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22
- 네이버를 대리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23
- 국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완전물급부 등 소송'에서 대법 파기환송.....24
-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무료 변론.....25

-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여의도 파크원 사업 재개를 위한 브릿지론 PF 자문26
- 부산은행을 대리하여 베트남 호치민지점 개설 자문.....27
-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포스코 LED 매각 자문.....28
- KB금융을 대리하여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बैं킹 사업 진출 관련 자문.....29

■ 법률 논단 ■

- [계약·바이오·의료]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금지의 위헌성.....30

■ 최신 판례 ■

- [민사] 상속재산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42
- [건설부동산]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통지의무의 취지와 의무 해태시의 책임 범위.....45
- [금융·증권] 모용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50

■ 최신 법령 ■

- [계약·바이오·의료]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소개.....57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61
- [지적재산권] 상표법 전면 개정.....63

■ 단신 ■

- 김지형 고문변호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공 사망사고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67

-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문희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신규 중재위원으로 위촉.....68
- 임성택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69
- 송기방 고문변호사,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으로 위촉.....70
- 심희정 변호사, '제1회 월드핀테크포럼'에서 '핀테크 규제개선'을 주제로 발표.....71
- 이행규 변호사, 코트라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하는 '캄보디아 지역과정'에서 '현장에서 본 캄보디아 리스크 분석(인사, 노무, 세무, 법률 등)'을 주제로 강의.....72
- 이행규, 권용숙 변호사, '금융기관 동남아 M&A 세미나'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금융기관 M&A 시 법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73
- 이행규, 정철 변호사, '국내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업 해외진출전략 세미나'에서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 여신전문금융법제'를 주제로 발표.....74
- 정원, 박성철, 박호경 변호사, 로앤비에서 '최근 개정, 재건축 재개발사업 법률실무'를 주제로 강의.....75
- 권순철 변호사, 선릉 D.CAMP 세미나실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이야기'를 주제로 강의 外.....76
- 손계준 변호사, 법률신문사 법교육센터(리걸에듀)에서 '공정거래법 핵심 실무'를 주제로 강의 外.....77
- 배지영 변호사, '팀코리아 민관합동사절단 이란 진출 세미나'에서 '이란시장 진출방안 및 법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79
- 고세훈 변호사, 'KOTRA 미얀마 시장진출 실무과정'에서 '미얀마 투자환경 및 외국인투자 법률/노동/조세 가이드'를 주제로 강의.....80
- 김성수 변호사, '실외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구역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실외 금연구역 정책의 국내 적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 外.....81

■ 지평 소식 ■

박상배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박상배 변호사](#))

박상배 변호사가 지난 6월 미국 University of Denver, Sturm College of Law,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Law and Policy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박상배 변호사는 금융파트 소속 변호사로, 자산유동화, 프로젝트금융, 부동산금융, 에너지, 자원, 항공기금융 등 특수금융 및 골프장 정상화 등 일반금융 전반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윤재민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윤재민 변호사](#))

윤재민 변호사가 이번 8월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윤재민 변호사는 금융파트 소속으로, 국내·외 PF 업무, 사업시행권 인수 자문을 포함한 건설부동산 업무, 도산 업무, 금융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회사, 일반회사 등에 대한 자문 업무, 외국기업 상장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부산사무소 임방조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임방조 변호사)

부산사무소 임방조 변호사가 2016년 7월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임방조 변호사는 바다에 인접한 부산을 중심으로 해상, 보험 및 국제거래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특히 해상사건 중 다수의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외국 및 국내 선주와 그 보험자를 대리하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해양안전심판절차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법원절차를 다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선박건조계약에 있어 선급금지급보증 관련 소송 등 선박금융 분야와 선원노동위원회 중재 등 선원 재해보상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세 및 가업승계 등에도 그 전문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황희동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황희동 변호사](#))

지평은 지난 8월 16일 황희동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황희동 변호사는 현재 지평 소송파트에 소속되어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공익런치행사 '나의 Lunch box - 한끼의 식사 나눔 캠페인'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공익 관련 활동을 하고 식사값을 기부하는 공익런치행사 '나의 Lunch box - 한끼의 식사 나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지난 6월 30일, 지평 환경실천소모임에서 '천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방향제(디퓨저)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로 모금된 돈과 방향제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공익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는 지평 공익위원회 봉사팀에서 재활용 페트병을 활용한 '미니 저금통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만든 저금통에는 각자의 기부금을 모아 연말 불우한 이웃을 돕는 공익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의 Lunch box - 한끼의 식사 나눔 캠페인'은 한끼 식사비용의 전액 혹은 일부를 기부하고 그 기부금을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써, 지평과 두루는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지평-두루, 첫 공익런치 행사 '방향제 만들기' 개최\(2016. 7. 4.\)](#)

[관련 사진]



2016년 지평 농촌봉사활동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 구성원 및 가족 31명은 지난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제천시 덕산면으로 손모내기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덕산면에는 마을 공동체 복원을 꿈꾸는 분들이 '사단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하여 덕산포럼, 마을 어린이집, 누리마을 빵카페 등 다양한 농촌공동체 살리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12년부터 농촌봉사활동을 5년째 이어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사진]



공익강연 '숲에 얽힌 이야기' 개최

지평은 지난 7월 5일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를 모시고 '숲에 얽힌 이야기'를 주제로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트리플래닛은 전 세계 12개국 116개 숲에 55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사회혁신기업으로, 이날 강연은 김형수 대표가 전세계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온 경험과 그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공유함으로 환경의 소중함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련 사진]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봉사활동 참여

지평은 현충일이었던 지난 6월 6일과 7월 4일, 8월 1일에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봉사활동 참여하여 180여 명의 노숙인분들을 대상으로 급식 배식 및 마무리 정리업무를 하였습니다. 급식봉사활동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무료급식 봉사활동\(2016. 6. 13.\)](#)

[관련 사진]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활동

지평은 매월 1회 제빵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지난 6월 4일과 7월 2일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빵만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5시간 동안 개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여 직접 구운 빵을 경성교회, 능곡침례교회, 산마루교회, 의정부하늘샘교회, 서기대외국인유학생, 연희동, 남가좌동, 흥은동 이웃들 등 나눔처에 전달 하였습니다.

[관련 사진]



지평, 두루와 함께하는 산 정화활동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6월 25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산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은 매해 산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은 변호사와 임직원, 가족 총 25명이 참여하여 돼지풀 제거 및 등산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관련 사진]



■ 주요 업무 사례 ■

정명훈 지휘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고발 사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지평은 정명훈 지휘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고발 사건에서 정지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중앙일보 - 경찰, '항공료횡령 의혹' 정명훈 무혐의 결론(2016. 8. 4.)
- 한겨레 - "정명훈 감독 항공료 허위청구했다는 증거없다"(2016. 8. 4.)
- 이데일리 - 횡령의혹 벗은 정명훈 "서울시향 훼손 유감...피해자 도울 것"(2016. 8. 4.)

[담당 변호사]



김영문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이근동 변호사



여연심 변호사



김선국 변호사



한철웅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전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지평은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에 방산업체로 하여금 후원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요트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정씨 부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단순수뢰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장남이 회사가 후원금을 받아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리걸타임즈 - [형사]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7억 후원금' 정옥근 전 해군총장 단순수뢰 무죄 (2016. 7. 4.)

[담당 변호사]



강성국 변호사



백종현 변호사



김선국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개발업체 부사장 박모씨를 대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K-voting) 관련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

지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K-voting) 관련 사기 사건'에서 개발업체 부사장 박모씨를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모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에게 회사 지분을 13억 원에 팔았고, 실적을 부풀려 회사 지분을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피해 업체가 지분 계약을 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피해 업체가 박씨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KBS뉴스 - '전자투표 특허' 내세워 회사지분 넘긴 임원 무죄\(2016. 5. 19.\)](#)

[담당 변호사]



강성국 변호사



강원일 변호사



황인영 변호사



이해원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 위헌결정 승소

지평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이 “모든 언론인에 대해 선거 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위헌결정은 선거에 대한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선거법 제와 언론관계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사]

- [조선일보](#) - [속보]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위헌(2016. 6. 30.)
- [파이낸셜뉴스](#) - “언론인 개인자격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 헌재, 지나치게 포괄적 제한(2016. 6. 30.)
- [경향신문](#) -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2016. 6. 30.)

[담당 변호사]



이공현 대표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장품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구나영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조항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 진행

지평과 두루는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조항, 비례대표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금지조항, 180일간 포괄적 선거에 영향을 주는 표현행위금지조항, 호별방문금지조항의 위헌성을 논증하는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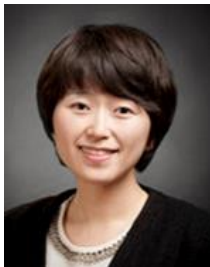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비례대표 후보 '거리 연설' 금지, 위헌인가...공개변론\(2016. 7. 14.\)](#)
- [머니투데이 - '비례대표 기탁금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서 치열한 공방\(2016. 7. 14.\)](#)

[담당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주연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김용진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서울시를 대리하여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에 대한 무효확인등을 구한 소송'에서 승소

지평은 서울시를 대리하여 강남구 및 강남구민들이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에 대해 무효확인등을 구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이 강남구 개발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고 강남구가 아닌 송파구 잠실운동장 등에 사용될 경우 강남구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관한 주민들의 이익은 간접적·반사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을 판단하면서, 이에 따라 구역의 지정을 내용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내·외의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위 도시관리계획의 효력 유무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1.7조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구만 써야" 소송 '되짜'\(2016. 7. 4.\)](#)

[담당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정원 변호사



박보영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김해시를 대리하여 SPC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제기한 행정소송 승소

지평은 김해시를 대리하여 SPC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제기한 행정소송 4건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뉴스 - 김해시, 복합스포츠투레저시설 1심 승소...내년 착공\(2016. 6. 1.\)](#)

[담당 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



강경운 변호사



이상근 변호사



정원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지평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수험생 94명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관련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 SBS뉴스 -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수험생 집단 손해소 기각(2016. 7. 20.)

[담당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이상근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지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수험생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출제오류가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 수능 '국어A형 19번' 오류 논란...법원 "문제없어"\(2016. 5. 26.\)](#)

[담당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네이버를 대리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

지평은 계약 종료 후 기존에 제공한 영화정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된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청구 소송에서 네이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 리걸타임즈 - [손배] "계약종료 후 영화정보 계속 사용한 네이버, 잘못 없어"(2016. 8. 5.)

[담당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이해원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국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완전물급부 등 소송'에서 대법 파기환송

지평은 국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자동차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완전물급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을 전부 인정하라'는 취지의 대법 파기환송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 [리걸타임즈 - \[손배\] "마이바흐 고장 수리에 11개월...교환가치 하락분까지 배상하라"\(2016. 6. 23.\)](#)

[담당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박보영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무료 변론

지평은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무료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스토킹 및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다투어 왔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여 그간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의 지원 요청으로 무료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오마이뉴스 - "스토킹은 관계를 위한 노력" 이런 말 막으려면(2016. 7. 28.)
- 여성신문 -가락동 스토킹 살인 3개월...살인범 법정서 "협박·스토킹 안했다"(2016. 7. 19.)

[담당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여연심 변호사



김선국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여의도 파크원 사업 재개를 위한 브릿지론 PF 자문

지평은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여의도 파크원 사업 재개를 위한 브릿지론 PF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약 10개월에 걸쳐 사업장 실사와 대주단 구성을 위한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말레이시아 및 바하마 로펌을 원만하게 조율해 브릿지론 PF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관련 기사]

- [더벨 - KB증권, 1200억 여의도 파크원 PF 조달\(2016. 8. 16.\)](#)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유정민 변호사



장소라 변호사



최정묵 외국변호사



서문용채 고문

■ 주요 업무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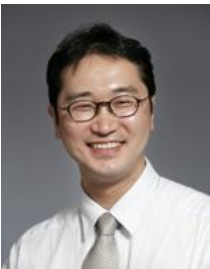
부산은행을 대리하여 베트남 호치민지점 개설 자문

지평은 부산은행을 대리하여 베트남 호치민지점 개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부산은행, 지방은행 첫 베트남 호찌민 진출\(2016. 8. 16.\)](#)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외국변호사



최규철 전문위원

■ 주요 업무 사례 ■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포스코 LED 매각 자문

지평은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포스코 LED 매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이데일리 - 포스코LED, 아미트론에 매각...90억원 유증 단독참여\(2016. 4. 5.\)](#)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KB금융을 대리하여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뱅킹 사업 진출 관련 자문

지평은 KB금융을 대리하여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뱅킹 사업 진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헤럴드경제](#) - KB금융, 글로벌 디지털뱅크 '뜨거운 관심'(2016. 6. 14.)
- [문화일보](#) - KB금융, 동남아시아 진출 박차... 캄보디아서 디지털뱅크 서비스(2016. 6. 14.)

[담당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CHEA Somala
외국변호사

■ 법률 논단 ■

[제약 · 바이오 · 의료]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금지의 위헌성¹(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²)

의료법이 2012년에 개정되면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 의료법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던 것에 비하여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란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진료는 한곳에서만 하고 다른 곳에서는 경영만 할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의료인이 타 의료인의 투자나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의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대표적 복수개설 사례로 취급되는 유디치과의 등장으로 치과 임플란트 비용이 절감된 것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복수개설로 리베이트나 환자유인 행위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의 증가와 복수개설 허용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복수개설 금지 입법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현행 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입법 경위

가. 법률 규정의 내용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

¹ 본 원고는 병원경영·정책연구 제5권2호(2016년 7월)에 게재되었습니다([관련 링크](#)).

² 필자는 헌법재판소에 복수개설금지 규정의 위헌 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청구인 대리인입니다.

다”(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복수개설 금지 규정’이라고 함)³. 이른바 복수개설 금지 규정이라고 알려진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에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의료법의 일부로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그해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이하 ‘구법 규정’이라 하고, 이에 대비하여 개정 규정은 ‘신법 규정’이라고 함).

구법 규정 :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즉 구법 규정에 비하여 신법 규정은 (1)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강조의 수식어가 추가되고, (2) “개설” 대신에 “개설·운영”으로 변경되어 개설 외에 운영이란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나. 입법 경위

이와 같은 법률개정은 제18대 국회의 회기(2008년 5월 30일~2012년 5월 29일) 중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인 2011년 1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이 2011년 10월 18일에 회부된 양승조 의원이 제안한 법률개정안(이하 ‘양승조 의원안’이라고 함) 등 7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을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당일 바로 가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위 의안은 그 다음날인 12월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다시 그 다음날인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18143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라는 의안명으로

³ 유사한 규정으로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봅니다(제21조 제3항 전문개정 2008. 3. 28, 시행일 2008. 9. 29). 또한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제12조 제2항).

원안가결이 되어 국회의결이 확정되었습니다⁴.

복수개설 금지 규정 제안이유의 요지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1인 1 의료 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물론이고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간략한 내용 외에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없었습니다⁵.

2. 법 적용상 문제점

가. 복수개설 금지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1) 의료법상 제재 규정

의료법은 복수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매우 무거운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87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벌인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비록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된다고 할지라도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비용 징수 규정

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링크)의 검색 창에서 제안대수: 제18대, 의안종류/처리: 법률안 / 통과 의안, 발의자/제안자: 제안종류 전체, 의안명: 의료법으로 검색하면 의안번호: 1814348, 제안일자 및 의결일자: 2011-12-29, 의결결과: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나옵니다.

⁵ 바로 위 각주4의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를 통해서 보건복지위원회 및 본회의에 접수된 의안 및 그에 관한 토의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으나 입법취지에 관하여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논의를 한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검색결과(링크). 2016년 6월 20일 접속.

국민건강보험법(이하에서 '건보법'이라고 줄여 표시함)은 복수개설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과는 달리 제재의 대상으로 복수개설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보법 시행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은 복수개설 금지에 위반되어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건보법에서 규정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를 징수합니다(제57조 제1항). 심지어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외에 환자가 스스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징수하여 요양기관에 납부한 환자 측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건보법 제57조 제5항, 2013. 5. 22. 개정).

즉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공단 등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공단은 의료법에서 금지한 복수개설 방식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수개설 방식의 요양기관은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정지의 대상이 되고,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도 환수당합니다. 나아가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3)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금 징수 규정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의료급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합니다(제23조 제1항). 그리고 의료급여기관이 되려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되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제1호). 그러므로 건보법과 유사한 논리로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른바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4)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복수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형사처벌 및 의사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의료기관 개설자로 등록된 명의인의 경우 그 명의로 받은 건강보험 급여나 의료급여의 비용을 징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징수 처분의 경우 수년에 걸친 진료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규모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 법적용의 실제 사례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내용은 행정기관인 공단이나 시장 등에 의해서 실제로 요양기관 혹은 의료급여기관 개설 명의인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처분 혹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방식으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처분이나 판결로 제재를 받은 의료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이 받은 불이익 처분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1) A시에 개설된 T병원은 의사 '갑'이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지만 갑은 다른 도시 P에서 갑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Q병원을 개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동료 의사인 '을'을 개설자로 정해서 T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을 명의로 개설된 T병원에서 실질적 진료는 을이 수행하였고, 다만 그 진료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개설 자금을 제공한 갑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개설 명의자인 을은 갑과 을 사이에 정한 약정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갑은 개설자금 제공 및 손익의 귀속주체로, 을은 개설명의자 겸 의료행위 시행자로 관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갑을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등 위반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단은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약 1년 반에 걸친 의료기관 운영의 진료비에 대하여 을에게 지급했던 건강보험 급여 및 본인부담금의 환수를 위하여 약 75억 원 상당의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을은 위 환수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 및 건보법상 환수처분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을은 헌법재판소에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신청하여 채택되었습니다. 갑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복수개설 금지 규정 및 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이 기각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공개변론이 결정된 을의 헌법소원 사건에 청구인을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A시의 시장은 을에게 의료급여비용 약 2억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였고 을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2) '병'은 '유디치과'라는 브랜드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인 주식회사 유디의 대표이사입니다(이상 '병과 회사'를 합하여 유디치과로 통칭함). 유디치과는 다수의 치과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면서 유디치과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동의 홍보나 재료 구입 등 영업을 수행하고 그 일환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기존 관행가격에 비하여 대폭 할인하여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병 사이에 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은 이 과정에서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병은 위 재판 진행 중에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위헌 여부 결정이 미루어지자 을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청구인 을을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3) '정'은 의료인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자신 명의로 개설된 브랜드의원 S점이 있음에도 동료 의료인 '무'의 명의로 브랜드의원 K점을 개설하게 하고 무에게는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정과 무는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정과 무는 위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복수개설 금지 규정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헌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복수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한 의료인이나 그와

합의하여 개설명의인이 된 의료인 등 당사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수십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 등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런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들이 개설자금을 제공하여 의료인을 개설명의자로 고용하면서 사무장으로 행세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복수개설 금지 규정이 제정되면서 사무장 병원 외에 복수개설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되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 을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2016년 3월 10일에 공개변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헌바34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⁶).

3. 복수개설 금지 규정의 위헌성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현행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외견상 복수개설을 금지하고자 하는 뜻이 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의 입법 경위에서 보았듯이 구법 규정 역시 외견상 복수개설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개정 전후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규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 구법	개정 후 신법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음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즉 실질적 차이는 구법에 없던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수식어와 개설 외에 '운영'이 추가된 것뿐입니다. 한편 구법 시행 당시에도 의료인은 둘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이 금지되었는바, 그 취지와 적용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⁶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링크) 중 최근 선고 변론사건 목록 중 2016년 3월 변론사건 참조.

대법원 2003. 10. 23. 2003도256 판결

구 의료법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의사가 오직 한곳에서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제한한 이유는 1인의 의사가 제한된 업무 시간 중에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그중 일부 의료기관에는 개설자인 의사가 부재하는 곳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가 부재하는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사 아닌 자 즉 사무직원 등 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게 되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인의 의사가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의사가 어느 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자신이 채용한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개설명의인인 의사와 자신이 채용한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의료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면 이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기관 복수 개설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의료기관 개설하는 것을 면허증 대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편 의료법상 “개설”과 “개설·운영”이란 표현도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상으로는 개설로 규정했지만 그 의미는 의료업무의 개시라는 좁은 뜻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의료업무의 지속적 영위 유지라는 “운영”의 의미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그 행위의 주체를 제33조 제2항의 의료인이라고 명시하는데 그 규

정을 따라가 보면 개설의 의미가 개설·운영과 차이가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규정의 일부

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u>개설</u> 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㉕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u>개설·운영</u> 할 수 없다.
---	--

의료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규정한 개설에는 의료업무 개시 외에 의료업무의 영위유지 즉 “운영”이 포함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개시 당시에는 의사가 관여하고 그 후 의사 아닌 무면허자가 의료업무를 영위유지 즉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제33조 제2항의 개설과 제33조 제8항의 개설·운영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법률 개정 전후에 아무런 실질적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그에 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수식어야말로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입니다. 대체로 강조한다는 의미 외에 그 문구의 유무에 따라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배제되는지 실질적 기준이 되기에는 불분명합니다. 이미 법 적용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복수개설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및 금전상 제재가 예정된 것이라면 금지 행위의 내용이니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경제적·비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이는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지침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⁷. 이에 따라 비의료인은 의료법인의 이사를 겸직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정작 의료인은 그러한 겸직이 금지되는 불합리

⁷ 보건복지부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집행 지침(2014년 2월)

한 의료인의 역차별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 직업의 자유에 관한 과잉규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어디에 얼마나 둘 것인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의료행위를 베풀기 위한 적합한 위치와 규모나 그 숫자는 의료인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어떤 의료인은 개설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고려하여 다른 의료인이 개설한 곳에서 정해진 보수를 받고 업무에 종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1인의 의료인이 오직 한곳에서만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고 두 개 이상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정확히 밝힌 것처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관리하지 않도록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의료인이 여러 곳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각각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할 의료인을 정하고 그에게 적절한 보수를 약정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특히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는 과정을 보면 하루 사이에 아무런 실질적 찬반 논의조차 없이 백여 개의 의안을 순식간에 무더기로 처리하면서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명목상의 입법취지는 공공성의 제고라고 하지만 과연 의료인의 복수기관 개설 금지와 의료의 공공성이 실제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제대로 논증이나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법이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오히려 유디치과의 등장으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하락하면서 환자의 유치나 수입에 타격을 입은 치과 개원의사들의 이해에 기초하여 대한 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개설 금지 규정을 이른바 "유디치과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입법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인 환자들의 다양한 의료기관 선택권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막는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다른 한편 리베이트 수수나 환자의 유인 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복수기관 개설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환자의 유인 행위 등은 모두 의료법상 이미 별도로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발생하면 그에 적합한 제재를 가하면 됩니다. 더욱이 복수기관 개설 특히 유디치과 같은 공통의 브랜드 하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논리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것도 없습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의료인 1인이 오직 한 개의 의료기관 개설만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면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진료비 수입 전체를 박탈하는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입법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⁸.

의료의 선진화 내지 국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1인이 작은 규모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개업주의로 국한하기보다는 다수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한 의료기술이나 경영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서 더욱 발전적이고 다양한 의료공급 체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복수기관 개설 금지 규정의 원안이 되었던 양승조 의원안이 제기되었을 당시에 보건복지부 등은 의견 제출을 통해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는 것까지 규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참여는 “공동구매·공동마케팅 및 경영정보 공유 등”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구나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경영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⁹.

⁸ 보건복지가족부 등. 외국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사 제도 연구와 정책방안(2009년)

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1년 12월) 및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구법에 비하여 신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입법 취지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에 그치는 반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의심이 농후합니다.

4. 결론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그 입법경위에 비추어 보면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방식의 의료기관의 등장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상대 경쟁이 격화된 것에 대하여 위협을 느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기존 개업의들의 우려가 반영된 입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 규정 내용은 구법에 비하여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엄격한 개설 기관의 숫자 제한을 통해서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불확실한 반면에 그로 인해서 침해당하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행 복수기관 개설 금지 규정은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 최신 판례 ■

[민사] 상속재산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박영주 변호사 | 구정모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망인 A는 2002년 9월 5일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B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나. 원고는 망인 A에 대한 채권자로서,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4년 5월 2일 "B는 망인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138,332원 및 그 중 31,544,723원에 대하여 2014년 2월 25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다. 원고는 망인 A의 소유였던 경북 칠곡군 소재 전 2,165㎡와 임야 2,380㎡ 등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년 9월 1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년 9월 15일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조세가 상속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는 아니었습니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88,588,000원 중 1순위로 30,000,000원을 근저당권자 C에게, 2순위로 58,588,00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년 4월 2일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나.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

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4. 해설

이 사건에서 원심(대구지방법원 합의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B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 고유채무가 조세채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기존 판례는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마치 고유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인 경우에만 한정승인의 효과가 미치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조세채권자라 하여도,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다면 한정승인의 효과를 받게 된다고 하여, 한정승인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 최신 판례 ■

[건설부동산]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통지의무의 취지와 의무 해태시의 책임 범위

정원 변호사 | 윤성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A건설로부터 공사 일부분을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매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A건설은 위 하도급계약서를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지급을 보증대상으로 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A건설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위 계약서와 다른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만기가 3개월 뒤로 정하여진 약속어음을 수수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의 약관 제7조 제1항은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 기성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제1호)”,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때(제4호)”에는 각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또는 3일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는 위 별도 합의 및 약속어음 수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2년 5월분 하도급대금이 미지급 내지 연기 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A건설로부터 약속어음을 지급받으면서 2012년 6월 4일부터 2012년 8월 말까지 하도급공사를 계속 하였고, 만기가 2012년 8월 31일인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자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7조 제3항이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

45

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 5월분 이후의 하도급대금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증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보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내지 연기 이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받아 가면서 공사를 한 하도급공사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미치는지로, 결국 보증계약 약관 제7조 제3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입니다.

3.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나뉘었습니다.

가. 원심(대구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0333 판결)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2012년 5월분 하도급대금 미지급 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한 2012년 6월 4일부터 8월 말까지의 공사대금 부분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① A건설과 대구광역시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하도급대금이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 ② 대구광역시가 발주한 공사이므로 원고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③ 원고가 2012년 5월분 하도급대금이 그 지급예정일인 2012년 6월 3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지급기한을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 연장해 준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증채무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발주자인 대구광역시에 이러한 사정을 통지함으로써 시정지시 등을 통해 보증채무의 발생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기존 판례의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이하 '약관')이 보증채권자(하수급인)로 하여금 피고(건설공제조합)에게 약관 제7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취지는,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발생 원인이 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보증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거나 보증책임이 부당히 확대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피고 스스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증채권자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공사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보증책임'까지도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약관 제7조 제3항이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한 것은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증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보증채무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채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발생일 이후 발생한 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기준으로 아래 사실관계를 검토할 때,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2012년 6월 4일부터 8월 말까지의 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가 아니라 "원래의 보증책임"이 미치는 부분이므로 피고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① 원고와 A건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현금으로 지급할지, 어음으로 지급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하여 준 하도급지급보증서와 보증약관은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예정한 규정이 있다.
- ②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자체 계약 집행기준을 고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를 달리 정한 바도 없다.
- ③ 원심은 원고가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구광역시에 알려 보증채무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i) 2012년 7월 31일이 만기인 약속어음은 정상결제되다가 8월 31일인 약속어음부터 결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ii) 원고는 A건설과 별도 합의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반복하고 대구광역시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는 한 대구광역시가 A건설에 하도급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의 현금 수령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정리하자면,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로서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구체적으로 해당 채무 부분이 피고가 보증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증가된 것 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거나 대구광역시를 통해 현금 수령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경우이므로 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채무가 증가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시사점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은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기성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 “하도급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때” 건설공제조합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인과 별도 합의를 체결하여 약속어음을 지급받기로 하고도 건설공제조합에 통지하지 않은 것이 위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이러한 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약관이 문제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책임의 면책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건설공제조합의 조치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무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17713 판결](#)

■ 최신 판례 ■

[금융·증권] 모용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배성진 변호사 | 박은지 변호사

1. 법률 제정의 배경

가. 사실관계

(1) 경북 예천군 종합민원과 소속 공무원인 소외1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균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지역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가 예천군의 소유인데 이를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11년 2월 10일경 입찰서 작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교부 받음.

(2) 소외1은 2011년 2월 10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의 예천군청 출장소(이하 ‘이 사건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1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거래신청서에 원고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을 교부 받음.

(3) 피고1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과정에서 소외1에게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원고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외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란 아랫부분에 ‘(예천군)’이라는 부기를 해주었음.

(4) 소외1은 2011년 2월 11일 이 사건 통장 중 거래도장과 예금주가 표시된 면을 복사하

50

고 백지에 예천군청 민원실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오려내어 위와 같이 복사한 통장사본의 거래도장란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거래도장란에 예천군청 민원실 직인이 날인된 통장사본(이하 '이 사건 통장사본')을 만들었음.

(5) 소외1은 2011년 2월 13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통장사본이 마치 예천군청의 법인통장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불하대금 5억 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함.

(6) 원고는 2011년 2월 14일 예천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인 소외2에게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2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이 아닌 원고라는 이유로 송금이 곤란하다고 설명하였고, 이후 원고의 동의를 얻어 수신인을 원고로 변경한 다음 5억 원을 입금처리 함. 소외1은 2011년 2월 15일 이 사건 출장소에서 이 사건 계좌 개설신청 당시 미리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어 놓았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5억 원을 출금하여 편취함.

(7) 원고는 "피고1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법리의 제시

(1)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모용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전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본인확인 주의의무를 지우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계좌 이용자 및 계좌 이용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확인 여부, 피침해 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매우 다양함에도 모용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다양한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¹⁰

(1) 피고1에게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원고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1에게 이 사건 사기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1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통장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1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때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기행위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 계좌가 그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이 사건 사기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계좌가 이 사건 사기행위에 관한 원고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원고가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예견가능성 부정** : 피고1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넘어 서서, 소외1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인 원고를 상대로 그 계좌가 예천군의 법인계좌라고 기망하여 그 계좌로 균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으로 이 사건 계좌 및 통장이 이 사건 사기행위 과정에서 예천군과 사이의 진정한 토지불하거래인 것으로 믿게 하는 기망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가 엄연히 원고이고 그 거래도장란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1이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소외1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란 아래에 '(예천군)'을 부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피해자의 피해 방지가능성 긍정** : ① 원고에게 제시된 이 사건 통장사본의 예금주는 원고

¹⁰ 원심은 "피고1은 이 사건 계좌 개설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1의 과실과 소외1의 이 사건 사기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1은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농협은 피고1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본인인 반면 거래도장란에는 예천군 소유 토지의 불하업무와 관련 없는 예천군 민원실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실제 예천군 법인계좌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고, ②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할 무렵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이 아니라 원고 본인이라는 설명까지 들었으므로 원고로서는 5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예천군 법인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외1의 이 사건 사기행위 당시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5억 원의 손해를 입는 것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상당인과관계 부정**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피고1에게 원고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소외1의 이 사건 사기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결의 검토

가. 예금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3항¹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¹²는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¹¹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¹² 시행규칙 제3조(실명거래의 확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증으로 실명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예금계좌 개설 시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과 함께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대리인의 실명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은행연합회 업무해설에서 정한 확인 절차

은행연합회 업무해설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을 확인하는데, 이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으로도 가능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신분증에 의한 실명확인'의 경우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실명확인증표와 거래자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실명확인증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위조된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하고 금융거래를 한 경우는 금융실명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모용계좌 개설 관련 선형 대법원 판례 : '최소한의 확인조치' 요구

대법원은 금융실명법이 정한 실명확인 의무와 별개로 금융기관에 모용계좌가 개설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리인의 신청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인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출발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조치”라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나. 판결의 의의

대법원이 모용계좌를 통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위와 같이 ‘최소한의 확인 조치’로 한정된 이유는, 불특정 다수인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성격상 그 의무의 범위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용계좌의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선행 판례 법리를 보다 구체화한 사안입니다. 특히 예측가능성과 피해자의 피해 방지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였고,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의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제시하며 금융기관의 책임 범위가 부당히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상당인과관계 존부가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그에 따른 판단 역시 보다 신중하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 최신 법령 ■

[제약 · 바이오 · 의료]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소개

이태현 변호사 | 박종완 변호사

1. 법률 제정의 배경

올해 6월 23일부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습니다. 의료법 등 기존의 보건의료 관계 법률이 의료의 공공성 및 보건의료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관광 규모가 확대되면서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졌고, 의료의 공공성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이와 같이 늘어나는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로서,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2. 의료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

의료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제4조)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제6조)

57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i)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ii)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연간 보상한도액 1억 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 원 이상의 요건을 등록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2) 우회투자의 금지(제5조)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제8조) 및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제9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등록증을 게시하고 외국인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제10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①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병상 수의 100분의 5, ② 그 이외의 종합병원은 병상 수의 100분의 8에 따른 병상 수를 의미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8조).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제12조)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상담·자문 및 협상·협약 지원,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6)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제15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공항, 무역항 등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7)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관리(제16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i)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ii)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8) 금융 및 세제 지원(제17조)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의료광고의 제한적 허용, 해외 원격의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해 등록 취소, 과징금 등의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22조~제31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관리(동법 제16조) 규정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범위는 국외에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i)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ii)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에 한정되고, 직접 외국인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다운로드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최신 법령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배성진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1. 주요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이 2016년 6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고객응대업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의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보험회사에게 부과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험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4124호, 2016. 3.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3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하고(제1호),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제2호).

그리고 보험회사는 직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해야 하고(제3호),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제4호).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2

호의3, 시행령 별표 9 제2호 서목).

상기 개정사항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최신 법령 ■

[지적재산권] 상표법 전면 개정

최승수 변호사 | 허종, 이해은 변호사

1. 개정이유

2016년 2월 29일 자로 상표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개정 상표법이 2016년 9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①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定義) 규정을 상표의 핵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 ② 원칙적으로 상표부등록사유의 판단시점을 등록결정시로 일원화하되, 예외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상표부등록사유 판단시점을 출원시로 하며, ③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하는 등 상표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을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여, 상품의 식별력과 출처 표시 등 그 핵심적인 의미와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했습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현행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표장의 범위를 한정 열거적으로 정의한 것과 같이 오해될 소지가 있어, 상표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비된 것입니다. 한편 현행 상표법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이를 상표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나.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

63

판의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17조 제1항). 아울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절차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로 확대했고,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추완기간을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로 확대했습니다(제18조, 제19조). 상표에 관한 분쟁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이 형식적인 요건 불비로 인해 권리가 쉽게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권리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행사 추완 기간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연장했습니다.

다.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출원인의 범위를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확대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21호). 현행 상표법은 조약당사국 등록상표권자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출원일전 1년 이내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의 부정출원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의 경우에도 부정출원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 규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다수 외국의 입법례에서 이를 부등록사유 내지 무효사유로 하고 있어, '상표등록거절사유'에서 '상표부등록 사유'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상표부등록사유 판단시점을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시점으로 하도록 통일했습니다(제34조 제2항). 현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이 포함된 상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의 경우 사익보호규정으로 보아 상표출원 시에 부등록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으로 인해 출원 시로부터 등록결정 시(또는 거절결정) 사이에 위 보호사유가 소멸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상표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위 제6호 내지 제10호 부등록사유 해당 여부도 등록결정 시에 판단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상표부등록사유가 소멸했음에도 재출원을 해야 하는 번

거로움을 해소하고 관련 비용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 다만 예외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 등인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상표부등록사유 판단시점을 출원 시로 정했습니다(제34조 제2항 단서).

바. 직권보정 사유를 '지정상품 또는 유구분(類區分)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때'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로 확대했습니다(제59조 제1항). 이로써 표장의 종류 등 출원서에 명백한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심사관이 직권 보정케 함으로써 거절이유 통지, 보정서 제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심사처리 지연(약 3개월 소요)을 방지케 하였습니다.

사.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 규정을 실질에 맞게 정비했습니다(제90조 제1항 제1호). 현행 상표법은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으나(제1호 사유),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모호하여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호 범위에 관한 해석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제조원 표시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로 정했습니다. 다만 기술적 표장에 관한 제2호 사유는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청구일로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하였습니다(제119조 제6항·제7항).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 범위를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불사용 저장상표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출원인의 상표선택 범위가 부당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취소심판 청구가 이해관계 다툼으로 변질되

어 심리가 지체되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에 따른 상표권 소멸시점도 심결확정 시였기 때문에 청구일로부터 심결확정 시 사이에 부당하게 출원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불사용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제도를 위와 같이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 상표법에서는 위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표권의 잔상효과로 인한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등록상표의 경우 어차피 자유로운 권리이전이 가능하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이와 같은 규제를 찾아보기 어려워 실질에 맞게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한편 심판청구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심판청구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 지정상품마다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제121조).

3. 나가며

이번 상표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표법의 근본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 상표권 관련 분쟁, 상표권 이용관계 설정에 관한 협상 등 제반 업무 분야에서 개정된 상표법에 따른 새로운 법률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 다운로드 : [상표법 전부개정법률](#), [\[특허청 보도자료\] 상표법](#), [국제적 추세 맞춰 26년 만에 대폭 바뀐다.](#)

■ 단신 ■

김지형 고문변호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공 사망사고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지난 6월 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공 사망사고 관련하여 서울시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사고 원인과 외주화, 전관채용 등 지하철 안전 사고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조사한 후 지난 7월 28일 시민보고회 형식으로 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서울경제 - 서울시, 구의역 진상규명위원회 위촉...시민·전문가 등 15명\(2016. 6. 8.\)](#)
- [연합뉴스 - 구의역사고 조사결과 발표\(2016. 7. 28.\)](#)

■ 단신 ■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문희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신규 중재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문희 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문희 변호사는 지난 6월 13일 대한상사중재원 신규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 단신 ■

임성택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 단신 ■

송기방 고문변호사,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송기방 고문변호사](#))

송기방 고문변호사는 지난 6월 21일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단신 ■

심희정 변호사, '제1회 월드핀테크포럼'에서 '핀테크 규제개선'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심희정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는 지난 6월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제1회 월드핀테크포럼'에서 '핀테크 규제개선'을 주제로 1세션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미디어펜 - \[월드핀테크포럼 2016,서울\] "핀테크 활성화 위해 데이터보호제도 완화 필요" \(2016. 6. 2.\)](#)

■ 단신 ■

이행규 변호사, 코트라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하는 '캄보디아 지역과정'에서 '현장에서 본 캄보디아 리스크 분석(인사, 노무, 세무, 법률 등)'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는 지난 6월 8일 코트라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하는 '캄보디아 지역과정'에서 '현장에서 본 캄보디아 리스크 분석(인사, 노무, 세무, 법률 등)'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이행규, 권용숙 변호사, '금융기관 동남아 M&A 세미나'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금융기관 M&A시 법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이행규, 권용숙 변호사는 지난 5월 18일 삼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한 '금융기관 동남아 M&A 세미나'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금융기관 M&A시 법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단신 ■

이행규, 정철 변호사, '국내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업 해외진출전략 세미나'에서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 여신전문금융법제'를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행규, 정철 변호사는 지난 6월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국내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업 해외진출전략 세미나'에서 각각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 여신전문금융법제', '미얀마 금융법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금융신문 - 금감원, 여신전문금융업 해외진출 세미나 가져\(2016. 6. 30.\)](#)

■ 단신 ■

정원, 박성철, 박호경 변호사, 로앤비에서 '최근 개정, 재건축 재개발사업 법률실무'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정원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정원, 박성철, 박호경 변호사는 지난 7월 4일 로앤비에서 '최근 개정, 재건축 재개발사업 법

률실무'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권순철 변호사, 선릉 D.CAMP 세미나실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이야기'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권순철 변호사)

권순철 변호사는 지난 6월 10일 선릉 D.CAMP 세미나실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권순철 변호사,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이야기'를 주제로 강의

권순철 변호사는 지난 7월 8일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손계준 변호사, 법률신문사 법교육센터(리걸에듀)에서 '공정거래법 핵심 실무'를 주제로 강의(법무법인 지평 [손계준 변호사](#))

손계준 변호사는 지난 5월 13일 법률신문사 법교육센터(리걸에듀)에서 '공정거래법 핵심 실무'를 주제로 강의하였고,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손계준 변호사,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하도급법 고급 마스터 과정'을 주제로 강의

손계준 변호사는 지난 5월 17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하도급법 고급 마스터 과정'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손계준 변호사, '혁신시장과 경쟁법'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 하계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

손계준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에서 18일까지 '혁신시장과 경쟁법'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손계준 변호사, 경쟁법연구 제33권에 논문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및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 판결' 게재

지난 6월 21일 출간된 경쟁법연구 제33권에 손계준 변호사의 논문이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및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손계준 변호사, 경쟁저널 제187호에 논문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 게재

지난 7월 출간된 경쟁저널 제187호에 손계준 변호사의 논문이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공저)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 단신 ■

배지영 변호사, '팀코리아 민관합동사절단 이란 진출 세미나'에서 '이란 시장 진출방안 및 법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배지영 변호사](#))

배지영 변호사는 지난 8월 29일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KOTRA 등 주관으로 테헤란 에빈호텔에서 열린 '팀코리아 민관합동사절단 이란 진출 세미나'에서 '이란시장 진출 방안 및 법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단신 ■

고세훈 변호사, 'KOTRA 미얀마 시장진출 실무과정'에서 '미얀마 투자환경 및 외국인투자 법률/노동/조세 가이드'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고세훈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는 지난 6월 23일 'KOTRA 미얀마 시장진출 실무과정'에서 '미얀마 투자환경 및 외국인투자 법률/노동/조세 가이드'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김성수 변호사, '실외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구역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실외 금연구역 정책의 국내 적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5월 21일 서울시 주최로 남산 문학의 집에서 열린 '실외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구역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실외 금연구역 정책의 국내 적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제한적인 흡연구역 설치를 준비하면서 흡연자, 비흡연자 시민 패널 약 100여 명과 전문가, 학생들 3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이데일리 -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한 시민 대토론회\(2016. 5. 19.\)](#)

김성수 변호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4년차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정신과 의료사고의 현황 및 대응'을 주제로 강의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4년차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정신과 의료사고의 현황 및 대응'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전문의 시험을 앞둔 4년차 정신과 전공의 전원을 대상으로 임상 진료 시작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한 연수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병원경영·정책연구 7월호에 논문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금지의 위헌성 여부' 게재

병원경영·정책연구 7월호에 김성수 변호사의 논문이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금지의 위헌성 여부'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문]

- 의협신문 -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위헌 가능성 높아"(2016. 7. 26.)
- 병원경영·정책연구 -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금지의 위헌성 여부(제5권 2호 2016년 7월호)